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31

제출년월일: 2022년 8월 29일

제 출 자: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유사·중복 과제의 반복 수행에 따른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연구 관리주체를 명확화하는 근거를 마런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안 제출시 유사·중복 용역 검증을 위한 사전 절차 추가(안 제9조제3항)

나. 부실용역 방지를 위한 용역실명제 의무화(안 제14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기타

(1) 입법예고 (2022. 6. 9.~2022. 6. 29.) 결과: 의견없음

(2)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조직담당관"을 "시정연구담당관"으로 한다.

제6조제6항 중 "조직담당관"을 "시정연구담당관"으로 한다.

제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의 의안 제출 시 주관부서에서는 학술용역 내용의 중복이나 유사학술용역 시행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연구가 완료되었거나 연구 중인 학술용역 과제와 중복되는 과제를 제출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유사한 연구가 이미 수행되었으나 해당 분야의 이론 및 기술 발전 등에 따라 새로운 연구가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학술용역실명제) ① 학술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

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

- ② 학술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관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을 과제 담당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사항을 관장하도록 한다.
- 1. 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 2.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용역 결과의 평가
- 3.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 4. 그 밖에 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학술용역심의회의 구성) ①	제3조(학술용역심의회의 구성)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	②
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임명 또	
는 위촉한다.	
1. 내부위원 : <u>조직담당관</u> , 예산	1 <u>시정연구담당관</u>
담당관, 평가담당관, 기술심사	
담당관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제6조(회의) ① ~ ⑤ (생 략)	제6조(회의) ① ~ ⑤ (현행과 같
	음)
⑥ 심의회 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6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시 <u>조직담당관</u> 학	<u>시정연구담</u>
술용역사업업무 담당사무관이,	<u>당관</u>
서기는 학술용역사업업무 담당	
자가 된다.	
제9조(의안제출) ①・② (생 략)	제9조(의안제출) ①・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③ 제1항의 의안 제출 시 주관부
	서에서는 학술용역 내용의 중복
	이나 유사 학술용역 시행을 예방
	하기 위해 정부기관 및 다른 지

<신 설>

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연구가 완료되었거나 연구 중인 학술용역과제와 중복되는 과제를 제출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유사한 연구가 이미 수행되었으나 해당 분야의 이론 및 기술 발전 등에 따라 새로운 연구가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조의2(학술용역실명제) ① 학 술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 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 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

- ② 학술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관부서의 과장급 공무 원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사항을 관장하도록 한다.
- 1. 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 2.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용역 결과의 평가
- 3.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 4. 그 밖에 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 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본 개정안은 조직개편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조례의 내용을 상위 규정의 취지에 맞게 통일하는 것으로, 비용증가가 예상되는 사항이 없음

4. 작성자

서울특별시 시정연구담당관 김대식(02-2133-7827)